

꿈(Dream), 열정(Passion), 도전(Challenge)

창의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2022학년도

관인고등학교 학교안전계획



2022. 3.



관인고등학교
[생활인권안전부]

목 차

I. 개요

1. 학교안전계획
2. 학교안전계획 추진현황
3. 학교 현황 및 조직체계

II. 세부 추진 계획

1.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2.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3. 교육활동 안전 강화
4. 학교 안전문화 확산
5. 안전한 학교 시설 및 환경 조성
6.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
7. 부록

[붙임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점검표

[붙임2]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

[붙임3]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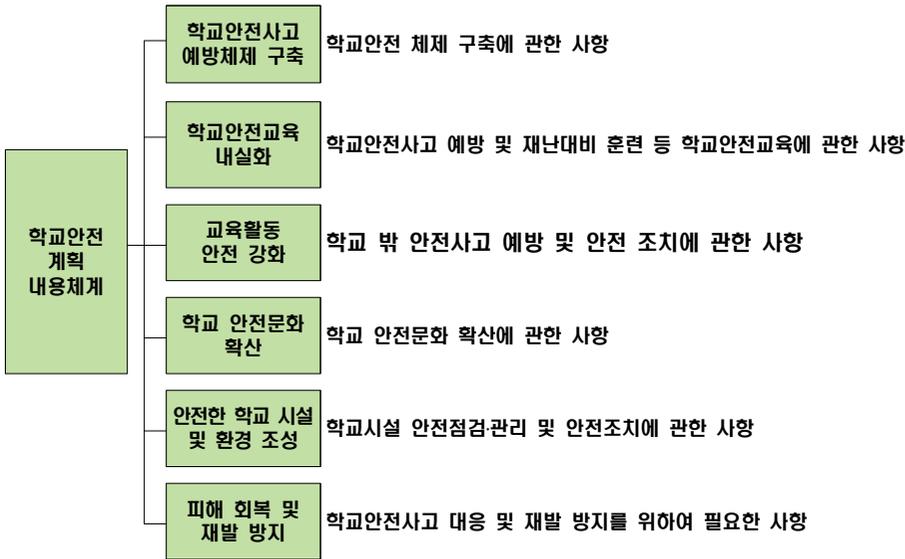
I 개 요

1. 학교안전계획

가. 학교안전계획의 목표

- 실효성 있는 학교안전계획 수립으로 학교 구성원의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 자신의 안전과 타인과 동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역량 배양
- 학교 안전 관리의 체계성(계획, 준비, 실행, 평가, 피드백) 확보

나. 학교안전계획의 내용체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다. 학교안전계획의 수립·시행

-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라 학교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

2. 학교안전계획 추진현황

가. 학교안전교육 추진 실적

1)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현황 (기준 : 2021학년도)

연도	구분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 이수				
		교원	직원	공무직	계 (A)	교원	직원	공무직	계 (B)	이수율 (B/A)×100
2021.3.1. ~ 2024.2.28	2021	19	2	7	28	5	0	0	5	18%
	2022	19	2	7	28					
	2023									

- ※ 3년(안전교육 3주기, 2021~2023)마다 모든 교직원이 안전교육 직무연수(15시간 이상) 이수
- ※ 교원 :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사(3년 이상 근로 계약) 포함
- ※ 공무직 : 3년 이상 근로 계약 종사자

2) 학생 및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기준 : 2021학년도)

교육대상 인원수(명)			교육 실시 인원 수(명)			실사비율(%)	
교직원 및 학생 수			교직원 및 학생 수			교직원	학생
교직원	학생 (교)	소계	교직원	학생(교)	소계		
28	21	49	0	21	21	0	100

※ 교직원 심폐소생술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미 실시

3) 안전영역별·교육과정영역별 학생안전교육 이수시간 현황 (기준 : 2021학년도)

안전영역(필수이수시간)	교육과정영역별 이수시간									창의적 체험 활동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합	1학기	2학기	합	1학기	2학기	합	
생활안전(10)	6	4	10	5	5	10	4	6	10	0
교통안전(10)	6	4	10	5	5	10	5	5	10	0
폭력 및 신변보호(10)	6	4	10	5	5	10	7	3	10	0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10)	5	5	10	5	5	10	7	3	10	0
재난안전(6)	3	3	6	3	3	6	3	3	6	0
직업안전(3)	2	1	3	2	1	3	2	1	3	0
응급처치(2)	1	1	2	1	1	2	1	1	2	0
계(51)	29	22	51	26	25	51	29	22	51	0

나. 전년도(2021학년도) 학교안전계획 추진실적

6대 분야	평가지표(평가내용) ※ 2022.2.28. 기준	○/×	향후대책
1.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1. 학교 재난대응(사고현장 지휘소)의 역할, 책임을 학교 실정에 맞게 구성·운영 함	○	
	2. 학교안전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 간 협력이 잘 이루어 짐	○	
	3. 학교안전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누구나 로그인 없이 확인할 수 있음	○	
	4. 학교와 주변지역의 위험에 적합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계획이 잘 운영 됨	○	
2. 학교안전교육 내 실 화	5. 학생안전교육 관련 교육부 고시(2017-121)기준을 준수하여 운영 함 ※ 2021학년도 학교안전교육 시간 51차시	○	
	6.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규정에 맞게 안전연수를 실시 함	○	
3. 교육 활동 안전 강화	7.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 할 수 있는 재난대응훈련(안전교육)을 실시 함	○	
4. 학교 안전문화 확산	8.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교육활동을 운영함 ※ (예시) 학생 주관 참여, 안전계획 수립 시 학생 의견 반영 등	○	
	9. 학교 안전점검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 함	○	
	10. 학교 각종 행사 시작 전 모든 참석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함	○	
5. 안전한 학교 시설 및 환경 조 성	11. 재난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배낭을 구성하여 비치 및 활용함	○	
	12. 식중독 및 각종 전염병(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절차와 지침을 준수 함	○	
6.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13. 정서행동 특성검사 및 심리검사 결과 활용 등 위기학생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 함	○	
	14. 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 포함) 피해자에 대해 심리치료 등 내실 있게 지원함	○	
	15.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대응방법, 교훈 등에 대해 자료를 누적 관리하고 있음	○	

다. 전년도(2021학년도) 학교안전계획 자체 평가표

6대 분야	16대 과제	평가지표(평가내용) ※ 2021. 3. 31. 기준	계획수립	
			○/×	미흡한 경우 향후대책
1.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교육활동 중) 위기상황 신속 대응 체계 구축	1. 학교 재난대응(사고현장 지휘소)의 역할, 책임을 학교 실정에 맞게 구성하였는가? ※ 학교 교직원 비상연락망 구축 포함	○	
		2. 학교 위기상황 발생 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육부 보고 절차, 방법을 기술하였는가? ※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선조치 후보고	○	
	㉡학교안전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3. 학교안전계획에서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교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 학교안전책임관, 안전부장 운영 해야 함	○	
		4. 학교안전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 간 협력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	
	㉢학교 안전 계획 수립·평가의 내실화	5. 법령에 정해진 절차, 기간을 모두 준수 하였는가? ※ 2월말까지 학·운·위 심의, 3월말까지 제출	○	
		6. 학교안전계획 수립 시 안전담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는가? -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계획을 수립(○) - 신규, 전입 교사, 1인 단독 수립(×)	○	
7. 학교안전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누구나 로그인 없이 확인할 수 있는가? - 홈페이지 탑재, 로그인 없이 확인 모두 충족 시(○)		○		
8. 학교와 주변지역의 위험성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2. 학교안전교육 내 실 화	㉠경기도안전교육 과정의 안착	9.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은 교육부 고시(2017-121)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었는가? ※ 2021학년도 학교안전교육 시간 33차시 → 융합교육정책과-1098(2021.1.29.)	○	
		10.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대비훈련을 계획했는가?	○	
	㉡분야별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11. 수상안전(초등), 물놀이 안전, 실험·실습 안전, 체육활동에 대하여 학교안전계획에 포함되었는가? ※ 각 분야별 별도 지침·계획을 학교안전계획에 명시한 경우(○)	○	
		㉢교육공동체의 안전 대응 역량 신 장	12. 안전교육 교사연수 연간계획은 준비 되었는가? ※ 모든 교직원은 3년(2021~2023학년도) 내, 15시간 이상의 안전연수 이수	○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13. 요양호자(안전약자)를 파악하고, 안전약자 안전대책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6대 분야	16대 과제	평가지표(평가내용) ※ 2021. 3. 31. 기준	계획수립	
			○/×	미흡한 경우 향후대책
3. 교육 활동 안전 강화	①방과후학교 및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관리 강화	14. 현장체험학습(진로체험, 수련활동, 수영수업 등) 안전대책으로 학년 또는 학급별로 비상배낭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구비 되어있는가?	○	
		15. 현장체험학습 계획 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의 사항들을 교사들에게 공지하고, 계획에 게재 하였는가?	○	
	②체험중심 맞춤형 안전교육 생활화	16. 학교 구성원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재난대응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예시)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대피 훈련	○	
4. 학교 안전문화 확산	① 학교 구성원 안전의식 제고	17. 학생 참여형 활동 운영 계획이 있는가? ※ (예시)안전동아리, 안전캠페인 등	○	
		18.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 점검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② 학교 안전문화 활성화 지원	19. 학교 안전주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매월 4일
		20. 체육대회, 축제, 졸업식 등 각종 행사 시 안전 사고예방 계획 및 행사 시작 전 참석자 대상으로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5. 안전한 학교 시설 및 환경 조	① 안전한 학교시설 확보 ②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 점검을 계획·실시 하였는가?	○	
		22. 재난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 배낭을 구성하여 비치하였는가?	○	
		23. 학교 CCTV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가? - 계획수립·홈페이지 게시 모두 다 충족 시 (○)	○	
6.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① 상담 및 치료 지원	24. 정서행동 특성검사 및 심리검사 결과 활용 등 위기학생 조기발견과 생명존중 교육 계획을 수립 하였는가?	○	
		25. 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 포함)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②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활용 ③ 안전사고 재발 방지	26. 재난과 학교안전사고의 보고와 보상에 관한 절차와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마련 해 놓았는가?	○	
		27.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대응방법, 교훈 등에 대해 자료를 누적 관리하고 있는가?	○	

3. 학교 현황 및 조직체계

가. 학교 현황

1) 일반현황

학교 현황

학교명	관인고등학교	설립 구분	공립
주소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관인로 20		
전화	031-538-8203 FAX 031-534-0254	홈페이지	www.kwanin.hs.kr
교장	이명심	학교안전책임관 (교감)	강*필
안전부장	진*미	행정실장	진*진

학생 현황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합계	비고
	학급수	2	2	2	1	7	
학생수	24	33	21	1	79		
교직원 현황	교장	교감	교사	행정직	교육공무원	총계	안전관련 자격증소지자
	1	1	17	2	8	29	.

CCTV 설치 현황

설치연도	설치 대수						장소	비고
	~40만	~50만	~100만	~200만	200만~	계		
2017	-	-	-	-	9	9	정·후문 2, 운동장 2, 현관출입구 1, 금식실 뒤쪽 1, 음수대 1, 현관방향 1	관인고등학교와 공동으로 관리
2020	-	-	-	-	2	11	전산실 내부 1 후문 1	

번호	위치	대수	성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화소	비고
1	본관 오른쪽 사각지대	1	양호	본관 오른쪽	24시간	30일	210만	-
2, 3	본관 입구	2	양호	본관 전면	24시간	30일	210만	-
4	본관 오른쪽 가스실 앞	1	양호	본관 오른쪽	24시간	30일	210만	-
5	기계실 앞	1	양호	자전거 보관소	24시간	30일	210만	-
6	구령대	1	양호	운동장	24시간	30일	210만	-
7	운동장 방향	1	양호	운동장	24시간	30일	210만	-
8	본관 왼편 사각지대	1	양호	본관 왼편	24시간	30일	210만	-
9, 10	전산실 내부	2	양호	전산실 내부 전체	24시간	30일	210만	-
11	후문	1	양호	후문 출입구	24시간	30일	210만	-

2) 학교 비상연락망

2022. 3. 2.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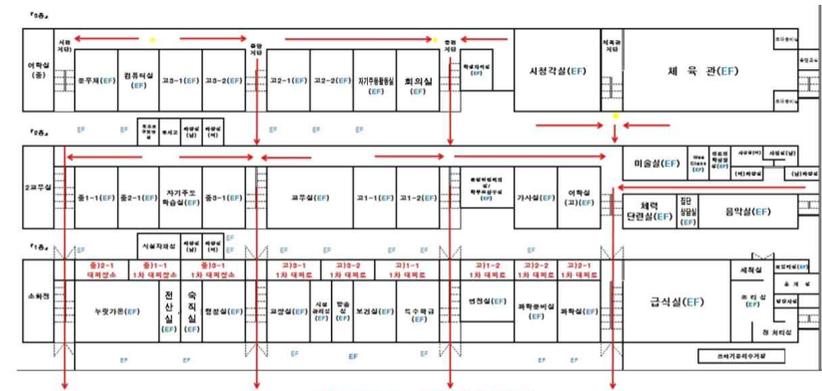
3)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가) 학교 위치



- ▶ : 대형(중형/소형 포함) 긴급차량 접근 경로(북원로, 창동로)
- ▶ : 중형/소형 긴급차량 접근 경로(탄동1교 도로, 교직원공동주택 뒤편 도로, 관인초 뒤편 도로)
- 교장실, 행정실 : 1층, 교무실 : 2층, 교실 : 2층, 3층

나) 비상 대피도



최종 대피로 : 운동장(구령대)

(○ : 현위치, → : 대피동선, EF : 소화기)

II 세부 추진 계획

1.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가. 안전관리 추진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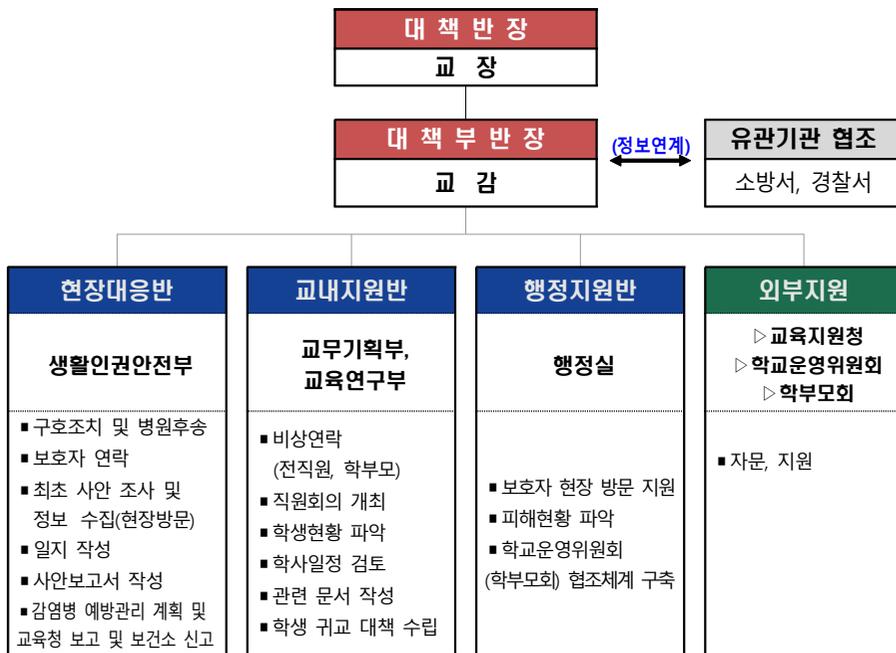
□ 평상시

- 평상시의 안전관리체제는 학교안전업무 구성요소인 안전교육, 생활지도, 안전점검, 비상훈련, 응급구조 등으로 업무를 세분화시켜 조직을 구성하거나, 학교의 부장 직제에 따라 안전 업무를 분담하여 조직 구성 가능

□ 유사시

- 재난 또는 사고를 대비한 유사시 안전관리체제는 평상시의 안전관리체제와 연속성을 지니되,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나. 학교 재난대응 및 구성·운영 [사고현장 지휘소]



다. 안전 관련 업무

- 학교안전 관련 업무는 학교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직원이 협력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 추진
- 업무 분장 시 부서간, 교직원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지정

직 책		임 무	비 고
최 초 발견자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5W1H, 행정안전부 상황전파시스템 가동) - 사고현장 보존(사진 및 동영상, 가림막 설치 등)	5W1H 는 유허원칙을 의미
대책 반장	학교장	- 사고대책반 소집 및 회의주재 - 사안논의 및 사고처리안 결정 → 해결방안 지시 -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사고 통지 및 협조 요청 - 사안처리에 대한 보호자 불신해소 대책 강구	
대책 부반장	교감	- 학교장 부재 시 업무 대리 (현장사고 대책 총괄) -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번호 및 기록자 2인 지정) - 반 구성 및 역할 배정 - 정보 종합 및 분석(언론 일원화: 언론, 학부모, 시민단체 등) - 반별 사안 처리 진행상황 확인(체크리스트 검토) - 유관기관 협조 의뢰 -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대책부반장 및 반장)	
현장 대응반	생활인권안전부	- 현장대응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교감 부재 시 업무대리(현장사고 대책 총괄) - 학년 피해 상황 종합 -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및 의견수렴 - 학년 관리(학생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대책 수립) - 사고현장 이동 및 상황파악, 정보수집, 시간대별 상황 보고 - 최초 사안 조사 및 사안보고서 작성 - 피해상황 종합(피해학생 후송병원별 학생인원 파악)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장대응반 일지 작성) - 사안관련 학생 정보제공(상담기록, 교육관계 등) - 보호자 연락 - 학급 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교실 정상화 노력 - 응급조치 및 의료자문 -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처리(피해 학생 및 교직원 등 보상)	
교내 지원반	교무기획부, 교육연구부	- 교내지원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학생 현황 파악 - 직원회의 개최, 비상연락(전직원, 학부모) - 피해학생 및 가족 지원 - 학사일정 검토 - 관련 문서 작성 - 상황실 전화응대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황판 및 체크리스트, 일지 작성) - 학생 귀교 대책	
	전문상담사 (wee클래스)	- 사안 관련 학급 및 현장목격자 등 상담 필요 학생 상담지원 (필요 시 외부지원 자문 및 지원 요청)	
행정 지원반	행정실	- 학생 귀교 이동수단 확보 수립 -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물적 피해 현황 파악 - 추가 사고 위험 여부 확인 - 교육시설공제회 업무 처리(재산 및 시설) - 행·재정 지원	
외부 지원	협력지원 단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회장	- 전문 외부기관 고유 역할 진행 -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협조(유언비어 확산 방지) - 사안 관련 학부모 중재 - 학부모 봉사단 조직 및 운영	

라. 안전사고 관리 및 재난 대응

1) 안전사고 관리 지침

-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 대응 및 조치

2) 재난 대응 지침

- 재난 발생 시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교육부, 2018)”을 참고하여 대피 실시

마. 학교안전 자체평가표 피드백

- “학교안전 자체평가표” 활용하여 자체적 실시한 결과를 학교안전계획 반영

2.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가.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 계획

1) 학사일정별 안전관리 연간 계획

- 교직원들은 학사일정별 안전관리에 있어 부여된 역할에 따라 적극 협력하여 안전업무 추진

구분	학사일정		안전교육	재난대비 비상훈련
	교내	교외		
3월	입학식, 개학식 학교안전계획 작성		학교 교내생활 안전교육 미세먼지 교육	연간 훈련계획 설명회
4월	1차 지필평가		화재 및 실험실습 안전교육	황사·미세먼지 훈련
5월	체육한마당		교내·외 안전사고 예방 지도, 재난 안전교육	화재 훈련 (소방서 합동 훈련)
6월			물놀이 안전 예방 지도	
7월	2차 지필평가, 과학의날 행사 여름방학		폭염 관련 예방 지도 안전사고 예방 중점지도	
8월			물놀이 및 식중독 예방 지도	
9월	개학		안전사고 예방 중점지도	체험학습활동 버스사고 대응 훈련
10월	1차 지필평가 학교안전위험성진단 (10~12)	주제별체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산 및 야외활동 안전교육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 훈련 등 현장훈련 2회 포함)
11월			화재 예방 지도 강화 미세먼지 교육	실험·실습안전 훈련
12월	2차 지필평가		겨울철 관련 안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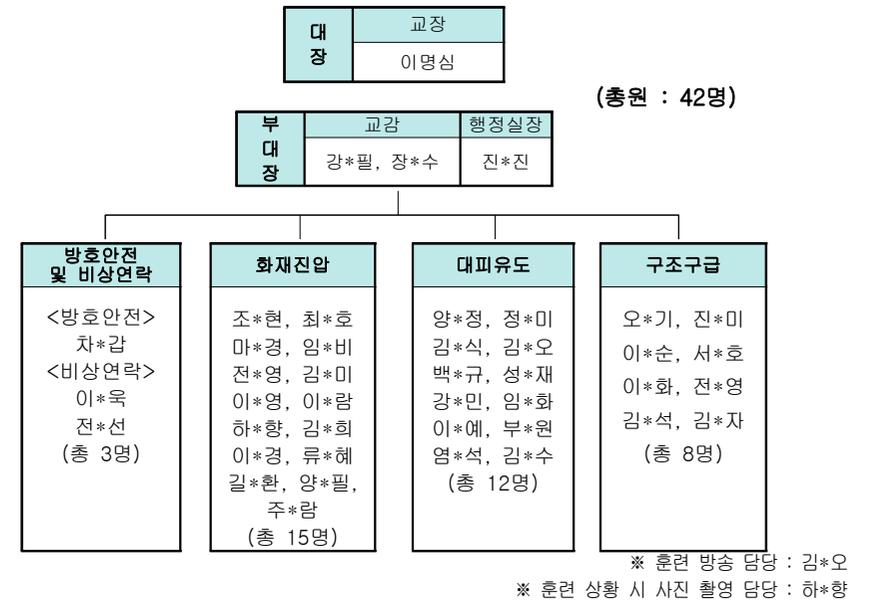
1)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정 조정이 있을 수 있음

1월	졸업식, 종업식, 겨울방학		졸업식 전후 교내·외 안전교육, 겨울철 야외 활동 안전교육	
2월	겨울방학			

□ 합동소방훈련

- 훈련 장소 : 관인중·고등학교 본관 교사(校舍) 및 운동장
- 훈련 유형 : 화재 시 비상 대피 요령 및 화재 진압 훈련,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응급처치 요령
- 훈련주관기관 : 포천소방서(영북119안전센터)
- 훈련 대상 : 관인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및 교직원
- 관인중·고등학교 자위 소방대 구성 현황

〈 관인중·고등학교 자위 소방대 〉



2) 학생 생활 안전 지도

- 학교 내·외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학생생활지도 지침”을 참고하여 실시

3)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계획

□ 교과 연계 안전교육

- 교과 연계 안전교육은 본교의 실정에 맞게 구성
 - 안전교육은 가급적 교과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 1학년

구분	과목명	학생 7대 안전교육(아동안전교육)						
		생활안전교육 (10시간/학기 당 2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10시간/학기 당 3회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10시간/학기 당 2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약물 및 사이 버 중독예방 교육 (10시간/학기 당 2회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재난안전교육 (6시간/학기당 2회 이상+6개 월에 1회 이 상)	직업안전교육 (3시간/학기당 1회 이상)	응급처치교육 (2시간/학기당 1회 이상)
1 학 기	국어					3	1	
	수학		4(3월,5월,7 월)					
	영어	4						
	통합사회				3			
	한국사			3				
	통합과학				2(3월, 6월)			
	과학탐구실험						1	
	기술 가정		2					
2 학 기	음악	2					1	
	체육			3				
	국어					3		
	수학		3(9월,11월,1월)					
	영어	3						
	통합사회				2(9월, 12월)			
	한국사			2				
	통합과학				3			
과학탐구실험						1		
기술 가정		1						
음악	1					1		
체육			2					
계	10	10	10	10	6	3	2	
기준시수	10	10	10	10	6	3	2	

나) 2학년

구분	과목명	학생 7대 안전교육(아동안전교육)						
		생활안전교육 (10시간/학기 당 2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10시간/학기 당 3회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10시간/학기 당 2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약물 및 사이 버 중독예방 교육 (10시간/학기 당 2회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재난안전교육 (6시간/학기당 2회 이상+6개 월에 1회 이 상)	직업안전교육 (3시간/학기당 1회 이상)	응급처치교육 (2시간/학기당 1회 이상)
1 학 기	문학				1	3		
	수학I		3(3월,5월,7 월)					
	영어I	5						
	사회문화				2			
	세계사			2				

2 학 기	생명과학I				2(3월, 6월)			
	화학I			2				
	운동과건강			1			1	
	일본어 I		2				1	
	보건							1
	독서					3		
	수학II		3(9월,11월,1 월)			1		
	영어II	5						
	사회문화					2(9월,12월)		
	세계사			2				
생명과학I					2			
화학I			2					
운동과건강			1				1	
일본어 I		2						
보건							1	
계	10	10	10	10	6	3	2	
기준시수	10	10	10	10	6	3	2	

다) 3학년

구분	과목명	학생 7대 안전교육(아동안전교육)						
		생활안전교육 (10시간/학기 당 2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10시간/학기 당 3회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10시간/학기 당 2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약물 및 사이 버 중독예방 교육 (10시간/학기 당 2회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재난안전교육 (6시간/학기당 2회 이상+6개 월에 1회 이 상)	직업안전교육 (3시간/학기당 1회 이상)	응급처치교육 (2시간/학기당 1회 이상)
1 학 기	언어와매체				1	3		
	확률과통계		3(3월,5월,7 월)					
	영어독해와작문	4						
	동아시아사/ 화학II			2				
	사회문제탐구 /생명과학II				2(3월, 6월)			
	생활과윤리			1	1			
	스포츠생활			1				1
	음악감상과비평 /미술창작				3			
	일본어II		2					1
	영어권문화/ 미적분			3				
2 학 기	화법과작문					3		
	수학과제탐구		3(9월,11월,1 월)					
	영어회화	5						
	동아시아사/ 화학II			1				
	사회문제탐구 /생명과학II				1			
	생활과윤리			1				
	스포츠생활			1				1
	음악감상과비평 /미술창작				2(9월,12월)			
일본어II		2						
영어권문화/ 기하	1						1	
계	10	10	10	10	6	3	2	
기준시수	10	10	10	10	6	3	2	

□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안전교육

- 교과 연계를 중심으로 하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연 번	부 문	일시(시간)	장 소	대 상	비 고
1	학교폭력예방교육	3, 9월	교실, 시청각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학기별 1회
2	성폭력예방교육	4월	시청각실	교직원, 학생	연 1회 1시간
3	성매매예방교육	4월	시청각실	교직원, 학생	연 1회 1시간
4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12월	시청각실	교직원	연간 3시간 이상
5	가정폭력예방교육	8월	시청각실	교직원, 학생	연 1회 1시간
6	아동학대예방교육	4월	시청각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연 1회 1시간
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4월	시청각실	교직원	연 1회 1시간

- 학부모 교육 : 학부모 총회, 1학기, 2학기 수업공개의 날 실시
- 모든 교직원은 3년(2021~2023) 내, 15시간 이상의 안전연수 이수
-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규정에 맞게 안전연수 실시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 운영시간 : 조·종례시간 및 자투리 시간 등을 활용
- 요일별 주제선정 및 운영

요 일	주 제	교 육 내 용	교 육 방 법
월요일	화재안전 나침반	- 지하철 화재 동영상 보기 - 지하철 화재 시 대처대피요령 익히기	강의식, 체험식
화요일	보건안전 나침반	- 응급처치 동영상 보기 -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익히기	강의식, 체험식
수요일	재난안전 나침반	- 우리학교 대피로 익히기 - 교실 내에서 대피법 익히기	강의식, 체험식
목요일	생활안전 나침반	- 학교 안전사고 동영상 보기 - 위험요소 찾기, 학교 안 사고안전으로 노래가사 바꾸기	강의식, 체험식
금요일	교통안전 나침반	- 교통안전사고 동영상 보기 - 토론을 통한 실천과제 찾기 사고예방 및 대처요령	토론식

4) 실험·실습 안전사고 예방

- 실험·실습실 안전대책은 과학실 안전 매뉴얼과 지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실험·실습실 관련 기준 등에 따라 실시

5)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교육

-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길잡이를 기반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6) 안전약자(요양호자) 안전지도

- 안전약자(요양호자)에 대한 안전지도는 “안전약자(요보호학생) 안전대책”을 참고하여 실시

- 세부 추진절차

가) 요양호 학생 파악

- (1) 학생 건강 자료 수집
 - 매 학년 초 건강실태 조사를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건강 자료를 수집
- (2) 학생 건강 상담
 - 건강실태조사서를 기초하여 선별한 학급별 건강이상자 명단을 토대로 건강상담(개별 상담, 학부모상담, 전화상담 등)을 실시함

(3) 건강상담 기록카드 작성

- 요양호 학생에 관한 상담내용인 병력, 응급 시 연락처, 투약관련에 관한 내용, 특이사항 등을 건강상담 기록카드에 기록함

(4) 요양호 학생 선정 및 명단 작성

- 건강상담 후 「학생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특별한 배려와 주의를 요하는 학생」을 요양호 학생으로 선정하여 내부결재를 득함

(5) 요양호 학생의 건강교육 실시

(6) 회귀, 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나 관련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고 안내함

나) 요양호 학생에 대한 교직원 연수

- (1) 학교교육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에게 반드시 사전 연수를 실시하여 응급사고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호 학생 명단 배부(개인정보 보호 명시) 및 학생의 건강상태 및 지도 시 주의사항, 관찰사항 등을 연수함

(2) 추가 요양호 학생 발생 시 담임교사는 모니터링하고 보건교사와 공유함

- (3) 수련활동, 체육행사, 주제별체험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특별한 상황이 생길 경우 보건교사는 담임(관련)교사에게 요양호 학생에 대한 관리를 재연수함

다) 요양호 학생 관리

- (1) 정기 건강상담(학기별 1회) 및 수시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건강상담기록카드에 기록·관리

(2) 학생 및 학부모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병원진료에 대한 지도·조언을 함

(3) 요양호 학생 건강상담기록지를 정기적(학기별)으로 관리함

라) 대상자 관리

(1) 대상자 선정 명단에 있는 학생들은 교직원의 주의가 필요한 학생으로

- (2) 교직원은 요양호 학생의 명단과 학교생활에서의 주의사항을 알고, 요양호 학생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함. 또한 이 학생들에 대한 훈

- 재난위험시설 관련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추진
-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매주 안전 점검 실시

3) 공사 현장 안전 점검

- 학교 내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월’ 안전 점검 실시(관련 법령과 경기도교육청 지침을 참조하여 추진)

나. 학교 시설 안전 관리 및 조치

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관리 및 조치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 2022 상반기 : 학교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점검 원격연수 및 행정조치 전달연수
- 2022 하반기 :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시설 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실시 결과보고 서식

가. 점검 일시 : 2022. . .

나. 학교 자체 개선 사항

	주요내용	투입 예산(천원)
1		
2		
계		

다. 개선 지원 요청 사항: 학교 ⇒ 교육(지원)청

	주요내용	추정 소요예산(천원)
1		
2		
계		

[붙임]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점검결과표 1부. 끝.

2) 개별 법령에 의한 학교시설물 관리

- 개별 법령에 의한 학교시설물 관리 계획을 작성

다. 통학차량 안전관리

- “통학차량 관련 각종 일지”를 작성하여 비치 및 점검

라. 학교급식 안전관리

- 학교급식 경기도교육청 지침·매뉴얼 등에 따라 실시

마. 학교 출입관리

- 학교 출입관리 지침·매뉴얼 등에 따라 실시

6.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가. 상담 및 치료 지원

-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유 법령과 지침을 참고하여 실시

- 외상 후 스트레스 복구 체계

가) 위기 개입 순서

- (1) 위기상황 발생시 학교 내 대책회의를 소집
- (2) 사안 파악 및 보고
- (3) 위기상담 준비 및 개입방안 논의
- (4) 위기 지원 기관 및 절차 확인
- (5) 유관 기관과 공조하여 위기 상황에 개입
- (6) 위기 상태에 따라 외부 전문의료기관에 연계
- (7) 위기 개입 과정 및 결과 검토회의
- (8) 장기적 추가지원 계획 수립(추수 상담 등)

나) 위기 개입 요청

- Wee클래스 및 Wee센터는 위기별 심리지원, 지속적인 추수상담 지원.
-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실시
- 개입 프로그램 - 경기도 교육청 안전교육회복지원단에서 발행한 매뉴얼 참고
[매체를 활용한 일상성 회복 가이드- PTSD예방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다) 포천시 학교 밖 전문기관 연계

- 상담센터: 포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포천가족성상담센터, 미래인지발달교육센터
- 의료건강서비스 :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포천의료원
- 사회복지기관 : 포천시 희망복지센터, 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드림스타트, 경기북부아동보호센터 굿네이버스, 포천종합사회복지관, 포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 포천경찰서

나.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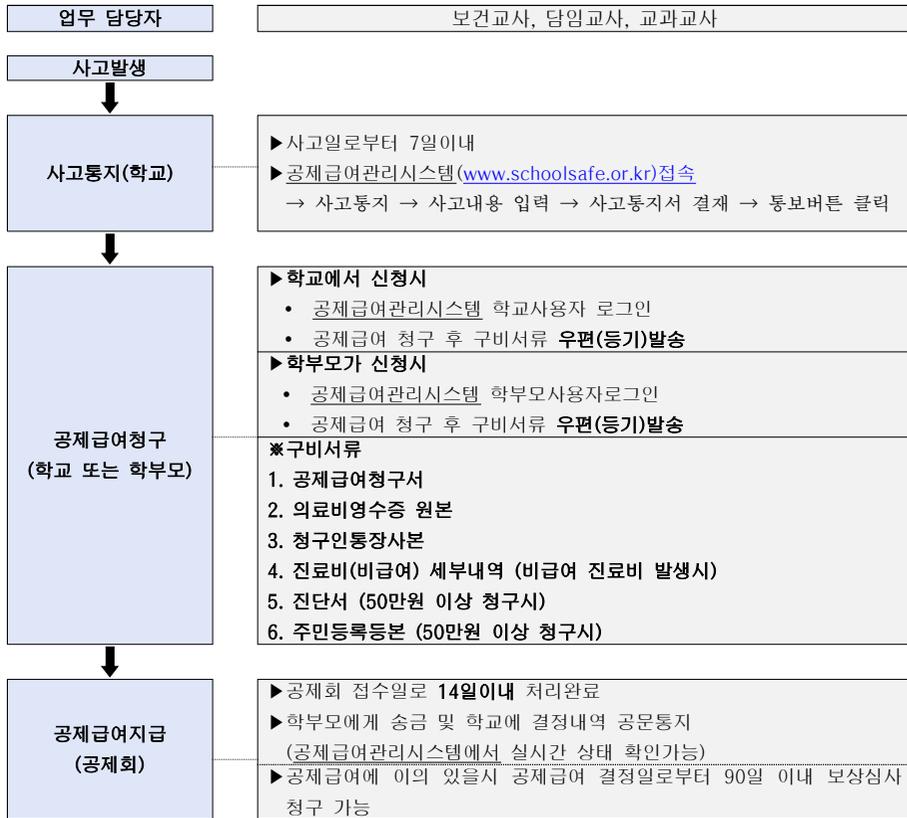
1)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제도

-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지원 절차(2022년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제5장 참조)

2)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피해복구

- 재난에 따른 피해 복구 절차(2022년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제5장 참조)

3)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청구



※ 교육활동참여자 : 반드시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 또는 요청에 의해 참여하는 사람만 인정

다. 학교 안전사고 재발방지

1)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안전사고 발생 건수	* 기준자료 :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 신청 건 수	비고
	- 2021.3.1. ~ 2022.2.28 발생 건 수 : 2 건	
	- 2020.3.1. ~ 2021.2.28 발생 건 수 : 0 건	
	- 2019.3.1. ~ 2020.2.28 발생 건 수 : 4 건	
	- 2018.3.1. ~ 2019.2.28 발생 건 수 : 3 건	
	- 2017.3.1. ~ 2018.2.28 발생 건 수 : 1 건	
	- 2016.3.1. ~ 2017.2.28 발생 건 수 : 4 건	
	- 2015.3.1. ~ 2016.2.28 발생 건 수 : 3 건	
- 2014.3.1. ~ 2015.2.28 발생 건 수 : 3 건		

2) 학교안전사고 재발 방지

- 2020학년도 학교 안전사고 0건
- 2021학년도 학교 안전사고 2건(체육활동 관련)
- 2020년 대비 2021년 학교 안전사고 2건(체육활동 관련) 증가
- 2022학년도에는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더 철저하게 하고자 함

7. 부록

[붙임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점검표

[붙임2]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

[붙임3]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관리

[붙임 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점검표

출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분야	안전기준	양호	불량	불량사유
건축물	1. 건축물 주변: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안전한 보행과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차량이 통행하는 교문 및 도로에는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한다. 나.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경계 턱이나 가드레일(guardrail) 등을 설치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2. 교실바닥 가. 교실바닥은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환기구, 시스템박스 등을 설치할 경우 주변 바닥과 같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3. 교실벽 가. 칠판을 설치하는 벽면은 칠판이 떨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석고보드 등의 건식 벽체, 이동식 벽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칠판 등의 부착물을 붙일 수 있도록 보강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교실에 노출되는 벽 모서리나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한다. 라.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상부 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4. 교실문 가. 교실문은 될 수 있는 대로 미닫이 구조로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교실문의 유효 폭은 90cm 이상으로 한다. 2) 미닫이 구조로 할 경우에는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3) 미닫이 구조 문의 바닥 레일 부분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4) 미닫이 구조 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5)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한다. 나. 교실문을 여닫이 구조로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하며, 유리는 충격에 의한 관통 및 파손 시 파편의 비산(飛散)이 없도록 한다. 2) 도어체크(문이 자동으로 천천히 닫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나 경첩 등을 설치하여 문이 닫히는 시간을 여유 있게 한다. 다만, 목재문의 경우에는 재질을 고려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한다. 4) 여닫이 구조 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다. 피난로에 있는 모든 문은 열었을 때 피난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분야	안전기준	양호	불량	불량사유
	5. 교실 창호 가. 창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창호의 틀 두께는 벽체의 두께와 같거나 더 얇게 한다. 2) 유리는 강도가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 3) 유리와 창호 간에 이격(離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얇은 유리는 필름 부착 등의 조치로 파손 시 파편 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외부 창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창대의 높이가 실내바닥면에서 1.2m 이하인 경우에는 창호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해당층이 지표면에 접하는 경우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추락방지 기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외부 창호가 바닥보다 아래에 설치되거나 커튼월(칸막이 구실만 하고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바깥벽을 말한다)로서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6. 특별교실 가. 화학약품을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특별교실은 바닥 표면을 내화학적(耐化學性)을 지닌 제품이나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난연재료(難燃材料) 이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특별교실과 준비실 사이에는 교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창을 두어야 하며 위험성이 있는 실험재료나 기구 등은 준비실에 교사가 관리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7. 복도 가. 복도와 교실(특별교실을 포함한다) 등의 바닥은 높이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교실 등의 내부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나. 복도 벽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복도에 노출되는 벽 모서리나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한다. 2) 복도의 바닥면은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복도에 독립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8. 계단 가.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계단 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원쪽 회전 계단 형태로 한다. 2) 계단을 갈음하여 설치하는 경사로의 표면은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한다. 나. 계단 단 높이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철판(계단 한 단의 수직면을 말한다)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분야	안전기준	양호	불량	불량사유
	2. 환기시설			
	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 환기 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나. 실험실 후드 등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재순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 실험실 후드나 국소 배기설비의 덕트는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라. 실험실 배기설비의 덕트 속도는 배기설비 내에서 물질의 퇴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히 빨라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마. 후드·후드 배기설비·국소 배기설비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시험 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3. 급배수설비 등			
	가. 급수시설·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물탱크는 매 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연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나.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 급탕(給湯)의 경우 학생 및 교사의 화상 사고를 고려하여 용도별로 적절한 급탕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라. 모든 위생 기구는 적당한 수량으로 사용 목적에 적합한 합리적인 간격과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소방 시설	1.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상경보설비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나. 감지기는 벽이나 보(洑)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 실내에는 그 용도(교실·합숙소·급식실 등)에 적합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2. 옥내소화전설비 등			
	가. 소화기는 교실에 한 군데 이상, 복도 및 계단에는 보행거리 20m 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나. 급식실·보일러실 등 발화위험성이 높은 실내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 옥내소화전설비는 각 부분으로부터 방수구까지의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는 각 부분을 유효하게 방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3. 피난설비			
	가. 유도등 전원배선을 전용으로 하고,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최소 20분간 동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나. 비상구 유도등을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30m 거리에서 문자와 색채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통로 유도등은 바로 아래에서 0.5m 떨어진 지점에서 1럭스(Lu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분야	안전기준	양호	불량	불량사유
가스 시설	1.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용기 보관실은 통풍이 잘 되게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나. 용기 보관실 주위에서는 화기(火器) 취급을 금지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 경계 표지는 출입구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라. 용기 보관실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하여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마. 용기 보관실의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2. 배관: 가스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건축물 내의 배관은 단독 피트 내에 시공하거나 노출하여 시공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나. 건축물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 조치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 배관용 호스와 중간밸브 및 연소기와의 접속 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3. 가스 기기: 가스 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나. 배기통의 재료는 불연성 재료로 하고, 배기통이 가연성 물질로 된 벽 또는 천장 등을 통과할 때에는 금속 외의 불연성 재료로 단열조치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 자연배기식 반밀폐형 및 밀폐형 연소기의 배기통 끝은 배기가 방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장애물이나 바깥 공기의 흐름에 의해 배기가 방해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라. 가스 기기가 설치된 공간에는 환풍기나 환기구를 설치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실험실습 시설	1. 실험실습 설비 및 비품			
	가. 취급주의를 요하는 실험기구·전기기기·화학약품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취급주의 안전표시를 붙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나. 실험실습대와 실험공구는 외관이나 기능이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 인화성 물질(알코올·가스 등)을 사용하는 실험실은 환풍이 잘 되어야 하고, 항상 소화기와 모래주머니를 비치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라.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비상문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마. 실험실습 시 안전관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수칙을 학생과 교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2. 약품보관설비			
	가. 유해·위험한 물질의 보관설비는 환기기능이 달린 구조로 하는 등 그 물질의 누출 등을 확인하기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나. 발화점이 낮은 물질(인·황 등)을 보관하는 설비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 화학약품 등 실험약품은 반드시 라벨을 붙이고, 실험 후 남은 시약(試藥) 등 폐시약은 지정된 용기에 분리하여 폐기물 전문가에 의해 배출될 때까지 별도 설비에 보관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붙임 2]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

구분	관계법령	주요내용
건축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공사 설계도서 건축사 작성(제23조) 건축허가 대상 공사의 건축사 감리 지정여부(동법 시행령 제19조) 철거예정 7일전 시장군수 구청장 신고(제36조) 건축물 철거 후 멸실 신고(제36조)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의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제거 및 결과의 기록 보관 (제36조)
전기	전기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정기점검* 실시(제65조) *매월 1회 이상, 용량별로 월 3회 이상
도시가스	도시가스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자 선임(제29조) 도시가스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제30조) 점검기관(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제17조)
승강기	승강기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승강기관리교육*(제16조) *승강기안전관리자가 지정 3개월 이내 교육이수 월1회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부 보관(제17조) 연1회 이상 정기검사 및 정기정밀점검*(제13조) *설치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대상
수도시설	수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시설에 절수설비 설치(제15조) 저수조 청소*실시, 위생상태 점검** 기록보관 및 수질검사*** (제33조) *반기1회 이상, **월1회 이상, ***연1회 이상 수도관리자 교육(제36조) ※ 1년내 8시간의 집합교육 및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교육
하수도시설	하수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화조 내부청소* 연1회 이상 실시(제33조)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 등 제거
장애인편의 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 최단거리 이동편의시설 설치(제3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제17조) 장애인 접근로 적정 설치(동법 시행령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에 휠체어 통행용이 및 출입문 시설 - 장애인 복도 통행에 지장 없는 관리 - 장애인용 계단 또는 승강설비 적정 설치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구비
소방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법 제10조) ※ 시설폐쇄, 훼손여부 및 주위 장애 사항 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5조) 자위소방대 편성·운영(규정 제12조)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실시(규정 제14조) ※ 연2회 이상 실시 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 훈련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소방종합정밀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각실 책임자의 화기단속 및 예방 조치(규정 제9조)

구분	관계법령	주요내용
석면	석면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시설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 보관(제21조) 석면조사결과 보고 - 교육감(제22조) 석면안전관리자 지정 보고 - 교육감(제23조) 석면안전관리자 안전관리 교육(제24조) ※ 관리자 신고 후 1년내 6시간 이상
급식시설	학교급식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 구비(제7조) 급식관리실에 필요한 사무장비 구비(제7조) 조리종사원 숫자에 맞는 휴게시설 구비(제7조) 급식시설 설치 시 기준*에 따라 시설설비 구비(시행규칙 제3조) *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시설설비 기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검사기관 정기시설검사(2년 1회 이상) 결과 표시(제12조) 자체안전점검 월1회 이상 실시(제15조) 3년간 안전진단실시결과 기록보관(제17조) 놀이시설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실시(제20조) ※ 2년 1회 이상, 1회 안전교육 4시간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제21조) 어린이 놀이시설 사용금지의 경우 관리감독기관에 통보(제16조) 어린이 놀이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적합(제11조)
외부인 출입	초중등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인 출입, 학교폭력예방 학생안전대책 수립(제30조)
학교보건	학교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실 66㎡이상 확보 및 세부기준 적합여부(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학생안전교육, 학교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조치(제12조)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제4조) 학교 환경위생담당자 지정·관리(규칙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 관리 -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 -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 관리
공사발주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발주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제30조) 석면 해체 시 등록업체(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 해체·제거(제38조)
시설사업 촉진	시설사업 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신설, 학교용지 변경시 교육청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제4조) 학교용지 내 시설물 증축, 대수선의 경우 교육청 건축승인(제5조) 시설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교육청 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제18조)
폐기물 관리	폐기물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폐기물의 종류, 성질, 상태별 분리보관(제15조) 사업장 폐기물의 전문업체 위탁 처리 여부(제15조)
하수도	하수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내 하수 및 배수관 신설의 경우 공공하수도 유입(제27조) 교내 오수 배출 건물 증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제34조) *정화조 등의 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의 의한 설치(제24조) *하수처리구역안 정화조설치, 하수처리 구역 밖 1일 오수처리량 2㎡이상 오수처리 장치 연결, 그 이하 정화조 설치

[붙임 3]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관리

- 학교안전법 제7조는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시설물을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표9-39>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교시설안전관리 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교육감 및 학교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학교시설 등을 설치·유지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점검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보고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안전시설에 대하여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4.>

- 점검 대상 : 유·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 점검 내용 :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6개 분야 26개 항목

<표9-40>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개관

분야	안전기준 항목
건축물	건축물 주변, 교실바닥, 교실벽, 교실문, 교실 창호, 특별교실, 복도, 계단, 화장실, 그 밖의 사항
전기시설	수변전설비, 분전반, 전기배선, 조명설비, 전열설비
설비시설	냉난방설비, 환기시설, 급배수설비 등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옥내소화전설비 등, 피난설비
가스시설	저장시설, 배관, 가스 기기
실험실습시설	실험실습 설비 및 비품, 약품보관설비
6개 분야	26개 항목

- 점검 절차 및 방법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집계표를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
 - 지역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제출된 집계표의 소요예산 등 적정성을 검토한 후 시도교육청에 집계표를 취합하여 제출
 - 시도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제출된 점검결과 보고에 기초하여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시행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점검결과 안전기준 미흡시설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기준에 적합조치토록 노력하며,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에 반영